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저항과 개입을 중심으로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논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화 문제와 연결시켜 고찰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수자 권리와 정치적 민주주의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즉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대의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권리보장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기존 문헌과 조선족 커뮤니티 회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들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어떻게 저항하며 어떤 내용으로 개입해왔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커뮤니티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이제는 독자적으로 재외동포정책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 주요어: 대의민주주의, 소수자권리, 재외동포정책, 조선족 커뮤니티, 정의

1. 들어가며

자크 랑시에르(2007)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과제는 데모스(demos)가 어떻게 권력을 차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데모스를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곧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고정화된 틀이나 이상화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시각은 한국처럼 군부독재를 거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룬 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할 지, 논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략 세 가지의 갈등과 긴장관계로 설명되어 왔다. 그것은 ①민주주의에서 대의제(代議制)의 형식화와 실질화 간의 긴장, 혹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간의 갈등 ②근대 민주주의와 다양한 사회적 차별 간의 긴장, 혹은 소수자 권리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긴장 ③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간의 긴장, 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 등이다(신영복·조희연 2006, 91). 이들 긴장관계 중에서 이 글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소수자의 권리, 그중에서도 이주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냉전의 산물인 좌우의 정치적 이념문제에 매몰되어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민주화 과정에 소홀해왔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나 동일한 목표를 위한 다양성의 위계화와 배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억압과 침묵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권용혁 2010, 76).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주민이면서 같은 민족이고 외국인인 '조선족'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찰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으로 이동한 재한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담론'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민족(nation)'에 대한 강조는 사회정치적 현실과 문화지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식민지기 이동의 역사와 냉전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조선족들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민족'을 우선시할 경우, 그들과 유사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특히 조선족동포에 대한 비하와 차별 문제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법의 제·개정과 방문취업제(H2), 기술교육비자(C3)의 발급 등 일련의 제도적 변화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저항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였는지, 조선족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수자로서의 조선족동포

1)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대의되지 않는 집단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을 대의제(代議制)라고 한다. 즉,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발달함에 따라 정치제도로 성장해왔

지만 현실사회에서 "대의제의 발달과 대의제로부터의 대중추방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병권 2011, 100). 국민국가 체제에서 "대의제 프레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같은 국민이라고 하여도 기득권을 갖지 못한 소수자들은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민 등은 '표준화된 인간상'에서 배제된 '소수자'로 논의된다(윤수종 2005).

더구나 글로벌 시대에 초국적 노동이동이 급증하면서 '국민국가' 단위의 민주주의에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노동이동으로 정치공동체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인종·민족·종교·사회적으로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새로운 하위집단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같은 정치공동체의 영토에 거주하지만 "대의민주주의 프레임 속에서 대의되지 않는 집단"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신영복·조희연 2006, 60),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주자들의 권리는 (1)새로운 소수자들로서의 시민권 보장과 (2)민주주의 사회의 '정의(justice)' 문제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먼저 시민권 보장과 관련해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며 국제적인 이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어떤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학자들 간에는 그것을 시민권(civil rights), 다문화 시티즌십(cultural citizenship), 사회적 멤버십(social membership) 등으로 정의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Saseen 1998; 벤하비브 2004; Tsuda 2007). 또한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논하는 연구들이 있다(이철우 2008a; 황정미 2010; 구지영 2011a; 최 현 2007).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현실에서 "탈국가적 시민권"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국민국가의 고유한 권한의 하나가 국가의 경계를 관리하며 개개인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때(Torpey 2000), 이주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철우 2008b). 좀 더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특수성에 착목하여 재외한인이나 재한동포들에게 '중첩시민권' 개념을 제안하기도 한다. 한국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는 다른 개발독재식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므로, '민족'을 보편 '시민'으로 해석하여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첩시민권 개념이 단일국가의 국적개념보다 더욱 유연하다는 것이다(권용혁 2010).

이에 반해 (2)민주주의 사회의 '정의(justice)' 문제를 소수자와 연결시킨 연구들은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의(justice)'를 문제삼는 것은 곧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존 롤즈(2003)의 정의론은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형식적 정의가 신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질적 정의는 사회적 재화와 의무를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공정분배의 원칙을 말한다.

정의론적 관점에서 소수자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와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는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정체성'으로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한국의 배타적인 문화 속에서 조선족 집단 및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한국사회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소수자집단, 조선족동포

한 사회를 지배하는 척도에 따라 다수성과 소수성이 결정된다고 할 때, 조선족동포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위치를 점한다. 2012년 현재 약 40만여 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 및 체류하고 있고 귀화자를 포함하면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소수자집단이다.

지금까지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상당 부분 축적되어 크게 (1)중국의 조선족 공동체연구 (2)조선족들의 해외이동과 정체성 연구 (3)재한조선족 거주밀집지역 연구로 나눌 수 있다. (1)의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 연구'는 중국 '연변'으로 대표되는 조선족자치주의 형성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 한국으로의 이동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한국으로 이동한 조선족들의 역사를 소개하여 재한조선족들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임계순 2003; 김두섭 2003; 권태환·박광성 2004; 권태환 편저 2005; 이승률 2007; 권준희 2011).

(2)의 '조선족들의 이동과 정체성 연구'는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조선족들의 이동은 크게 중국 내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과 한국을 비롯한 국외이동으로 구분된다. 중국 내에서 이동은 낙후된 농업지역을 떠나 경제가 발전된 도시이동으로, 근교지역에 조선족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문화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국은 대표적인 노무유입국이고 일본은 유학을 위한 이동이 주를 이루며 미주지역에는 노무와 유학을 위한 이동, 모두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예동근 2010; 구지영 2011b; 權香淑 2011). 이런 이동과정에서 많은 조선족들은 정체성의 갈등을 경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험하면서 이동한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이현정 2001; 이진영·박우 2009; 박광성 2008; 예동근 2009; 유명기 2002; 이현철·이채문 2012).

(3)의 '재한조선족 거주밀집지역'에 대한 연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50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조선족거주밀집지역에 주목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커뮤니티의 생성과 조선족문화의 변용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임성숙 2004; 김현선 2010; 박세훈 2010; 임선일 2010). 또한 재한조선족들 중에서 노동자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조선족들의 지위분화와 주류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의 전략들도 연구되고 있다(박광성 2010; 문민 2010; 예동근 외 2011).

그러나 지금까지 소수집단으로서 조선족커뮤니티를 한국의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집단의 성원권, 사회적 멤버십이나 사회적 시민권 논의들은 모두 법적으로 한계 지어지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시민사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조선족동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틀로써 조선족동포를 분석하였을 때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징을 더욱 엄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글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형식 중에 구체적으로 조선족단체, 커뮤니티들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어떻게 저항하고 어떤 내용으로 개

입하여 왔는지, 재외동포정책 변화에 따른 조선족단체들의 이합집산 과정과 그 논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정책변화 과정에서 조선족 단체, 커뮤니티들의 대응논리와 활동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재외동포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조선족 동포들에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법무부의 공식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보, 월보와 법무부, 노동부에서 전문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제, 기술연수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참고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조선족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선족단체들의 성명서와 공청회 자료집 등을 분석하였다. 재외동포 정책의 정부논리와 조선족단체들의 논리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왜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해석가능한가.

그러나 199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미등록 조선족동포들의 수가 많아서 한국에서의 체류자체가 불안했던 그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조직들의 자료가 잘 보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문자료와 성명서, 공청회, 심포지엄 자료집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들어난 조선족동포 언론 보도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내정책에 대한 조선족동포들의 의견과 한국의 시민단체와의 협동과 갈등, 분화과정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면담대상자는 단체장들과 단체회원들이며 주요 질문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단체의 입장과 개인적인 생각,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조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조사단체는 여섯 개 단체로, 대표와 회원 14명을 인터뷰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방문취업제가 도입될 때까지 조선족들을 조직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족교회와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대표적인 조선족단체로 성장한 '재한동포연합총회', '조선족연합회' 등이다. 조선족단체들이 의견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포타운신문사'와 조선족3세 지식인들로 구성된 '재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도 조사대상으로 삼았

〈표 1〉 조사대상 단체와 단체장 및 회원

단체명	사례	성별	생년	직업	국적/비자종류	면담일자
재한동포연합총회	A	여	1954	음식업	한국	2011.7.25
	B	여	1952	식당도우미	H2	2011.7.25
조선족연합회	C	여	1951	쉼터운영	한국	2011.7.4
	D	여	1952	쉼터운영	F4	2011.7.4
	E	남	1964	건설업	H2	2011.7.24
중국동포한마음협회	F	남	1971	음식업	한국	2011.5.13
	G	여	1981	대학원	유학	2012.8.31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	H	남	1997	대학원생	유학	2012.2.24
	I	남	1981	교수	F4	2011.6.30
동포타운신문사	J	남	1968	단체운영	한국	2011.6.30
	K	남	1977	편집장	F4	2012.4.16
조선족교회	L	여	1954	가사도우미	H2	2011.8.14
	M	여	1950	식당도우미	H2	2011.8.14
	N	여	1959	간병	H2	2011.8.14

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기보다 조선족 사회의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한조선족들의 친목모임 중 하나인 '중국동포한마음협회'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가는 기존 연구와 필자의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지만,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사단체와 면담대상자는 〈표 1〉과 같다.

4.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 논리

1) 정부의 중국동포정책 변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1년 한러 수교,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이들 지역과 한국과의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재외동포들과의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한국 건설업계의 붐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보따리장사로 한약재를 파는 동포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환율차익으로 수입이 늘게 되자 한국에 미등록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외동포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선정하면서부터이다.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에 '재외동포의 법적 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에 관한 특례법입법예고안'에서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의 자유왕래, 참정권, 공직취임권 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부와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로 1999년 8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외국적 동포도 출입국과 체류에서 준국민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1)]

그러나 이 법의 대상에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재외동포법은 '한국계 외국인'을 '외국적 동포'로 개념화하여 혈통주의를 포기하고 국적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 개념규정 없이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범주화하여, 외국적 동포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기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이종훈 2002).

이것은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해외로 진출한 동포를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2)] 그 결과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제한조치에 의해 조선족과 고려인은 실질적인 재

---

1) 이하의 재외동포법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이진영(2010)의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이진영(2008)의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 및 동포 만족도 조사』를 주로 참조하였다.

2)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11.29)" 참조.

외동포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된 동포들에게는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방문동거(F-1-4)로 입국한 후 취업자격(E-9)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3년 단수비자를 발급받았다. 이것은 재외동포법에서 사실상 배제된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게 차별적이며 왜곡된 형태로 제도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법무부는 ①중국 및 구소련 지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검토 ②체류자격 부여 이전에 '방문취업제' 도입 ③불법체류 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경력으로 입국 규제된 동포들에 대한 구제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그해 5월,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동포들에게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 활동기회를 보장하며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다른 지역 동포들에 비해 국내출입과 체류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국, 구소련 지역동포들에게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그들에 대한 포용정책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문취업제에 의하면,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이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단순노무 분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등이 부여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이 브로커를 통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합법화된 절차에 따라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면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3]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불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이나 '미등록' 체류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까다로운 비자심사와 위조서류 남발로 비자사기와 불법 취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뇨녕조선문보』 2007/08/14), 이런 비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방문취업제는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박우 2013).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내국인의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방문취업제도의 자유로운 모국방문과 취업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보완책으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의 우려가 없는 제조업,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인 F4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방문취업 동포 중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4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영주자격인 F5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방문취업을 위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1년 이상 계속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술연수비자(D-4)를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한다는 것이다.[4]

이 중 마지막의 기술교육제도는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5] 그러나

---

3) 2012년 현재 방문취업제로 체류하는 동포는 모두 27만여 명이고 이 중 중국동포는 26만여 명으로 전체 방문취업자 대상 중 98.5%에 이른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b).

4) 이하의 기술연구비자 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료와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와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조사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D-4)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참조하였다.

5) 법무부는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한 한국어 추첨탈락자들을 일반연수(D-4)자로 확인하고 허위등록 및 연수기관 이탈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한국학원 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외동포 기술교육

이 제도에 대해 동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학원에 내는 비용문제로 한 번에 3개월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도 부담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학원수업이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는 것과 교육과 함께 짧은 기간에 돈도 벌고자 하는 이들에게 월 40시간의 수업은 부담이 컸다. 학원수업과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중국 현지에 대기 중인 동포들의 체류신분변경을 대행하는 국내 행정사무소와 민간학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불법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 중국동포정책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자, 국내 시민단체들은 다른 지역동포와의 평등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재외동포법 법률개정과정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개정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재외동포정책에 적극적이었다.[6)]

한국의 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집, 조선족선교복지센터 등 교회단체들과 지구촌동포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같은 국내 시민단체들의 지원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미등록'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은 있었지

단을 출범시켰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의 임원으로 출입국관리 경력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활용하여 출입국업무의 전문성과 제3자 감시체제도 도입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a).

6) 2001년 12월 21일자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만, 재외동포법이 그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사정은 변하였다. 중국동포들의 합법적인 국내입국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국내노동시장에의 위협문제를 들어 이들에 대한 차별도 노골화되었다. 금융사기,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선족동포들이 지목되었고 그들은 "동포가 아니라 한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로 매도되었다(신현준 엮음 2013, 6-8).

현실은 이러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다른 외국인과 비교하여 조선족동포들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인 거리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의 하나로 사회적인 거리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적 분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에 대한 인상, 한국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설동훈 1999; 김병조 외 2011; 김상학 2004). 이때 '사회적 거리감'은 인종, 민족, 성,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편견, 차별,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이다. 윤인진(2010)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선진국출신 외국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수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선진국출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장애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순이다(윤인진 외 2010, 122-123). 이 순서로 보면, 조선족동포들은 개발도상국출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명진·최유정·최샛별(2010)이 측정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보면,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새터민, 조선족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 세 집단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통일되

〈그림 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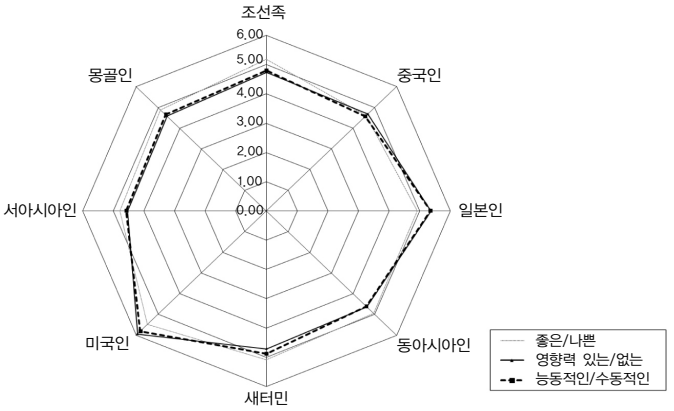

※자료: 이명진 외(2010, 76)

어 있는 반면에, 다른 국적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다. 그 다음이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몽골인, 서아시아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볼 때 조선족들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조선족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지는 않지만, 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차별감은 매우 크다. 미등록상태에서부터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아온 동포들은 “이전보다 대우가 훨씬 나아졌다(사례 E, 사례 F)”고는 하지만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다고 한다. 작업장에서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임금과 대우에서도 차별받으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벌러 온 불쌍한 동포” 취급한다는 것이다(사례 M). 가끔은 “짐승만도 못하게” 힘들게 일을 시키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한국인들 개개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성향의 문제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특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찾는다(이정은 2011, 237).

이렇게 볼 때, 한국인들은 조선족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비록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조선족들이 외국인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차별받기보다는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의 강한 계층의식, 권력에의 지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태도는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의 문제에 덧씌워져 이중차별이 행해지는 원인이 된다.

5.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조선족동포들의 저항

1)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저항과 시민단체와의 연대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선족동포들은 거센 항의를 하였으며 미등록상태의 조선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 그들을 지원한 조직은 교회였다. 1999년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 같은 시기에 서경석 목사는 구로동에 조선족 교회를 창립하여 한국으로 온 조선족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조선족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었고 대규모 집회와 회의를 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서경석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교회는 2000년에 조선족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주장하여 조선족동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미 1990

년대 초부터 양산되어온 조선족 미등록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였고 조선족 동포들도 정부에 이를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선족동포들이 조선족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무가지는 교회로 조선족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1년 4월 8일에 조선족교회의 '동북아신문'은 창간준비 1호를 발행하여 조선족 거주지역인 구로와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이 신문의 발행을 계기로 조선족 교인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선족교회에 등록한 조선족의 수는 8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북아신문은 조선족 교회와 서경석 목사를 소개하는 통로를 제공하였고 교회에 모인 조선족들 간의 교류로 서로에 대한 대규모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사례 J).

조선족들의 저항으로 가장 큰 결실을 이룬 것이 바로 재외동포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동포들은 재외동포법 제정 시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재외동포의 정의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도 우리동포임이 분명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정동포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둘째, 재외동포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셋째, 재외동포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넷째, 재외동포의 기준을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로 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었다.[7)]

---

7) 1999년의 헌법소원은 2년여가 지난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재외동포법은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였지만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동북아신문』 2012년 6월 22일자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참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의 사회적 참여가 두드러졌던 노무현 정부는 많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동포에 대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면서 동포들에게는 고용허가제상 특례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법에 비추어볼 때, 이 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은 스스로에게 '우리가 과연 동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이진영 2010). 그리고 그런 불평등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단식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는 조선족 100여 명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서경석 목사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위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한국성결신문』 2003/11/29). 당시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같이 활동하며 운동을 벌인 다른 교회에서는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하였다. 한국국적회복운동은 조선족들이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자칫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와해시켜 국외에서 동포들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농성장에 직접 찾아가 정부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8] 문제가 되었던 재외동포

8) 직접 농성장에 찾아간 노무현 대통령은 방명록에 "중국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국경과 법제도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믿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 잘 돌보십시오"라고 적었다. 조선족미디어 http://media.zoglo.net 참조(2010.10.5일자).

의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도 동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동포들의 저항은 일단락되었다.

조선족동포들이 처음에는 교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H2비자로 입국하여 조선족교회의 쉼터를 매주 주말에 이용하는 회원은 "조선족교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쉬다갈 수 있는 공간(사례 L)"이라며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교회로부터 분리된 단체들은 활동의 자유로움을 이유로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종교단체와 거리를 두니까 활동은 더 좋죠. 그 종교단체 있으면서리 뭐이 불편한가 하면 자기견해를 발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 (중략) 우리는 솔직한 말로 철저하게 맑스, 엥겔스, 레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철학은 가지고 있어요. 종교도 믿으면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 (중략) 하지만 제대로 실천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사례 D)

일부에서는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조선족들을 교회가 이용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2003년의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당시 나는 미등록 상태여서 일단 한국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를 바랬고 목사의 국적회복운동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은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사례 E)" 그만큼 그들은 '조선족'으로의 자부심이 강하다. "중국에서 항일운동도 하고 벼농사도 성공시키고, 중국의 역사에 모범적으로 남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 있는 민족(사례 D)"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민족적 자부심은 한국에서의 차별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재한조선족단체들이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교회와의 갈등으로 분리의 과정을 거쳤지만, 단식농성과 투쟁의 경험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교회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한다.

>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과정에서 한국의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거 못해봤거든요. 어떤 게 민주인가를 배웠어요. 자기주장을 하는 것도 배웠고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한국의 단체들과 같이 했길래 배우고 가능했어요."(사례 C, 사례 D)

조선족 단체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민주'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단지 단체활동에 참여한 소수의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조직적 행동과 정부에의 적극적인 요구가 수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민주'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의 차별문제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경우가 있지만,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단체 활동가들과는 조금 달랐다.[9]

> "조선족들은 왜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같은 대우는 안 해줘도 적어도 인간적인 대우는 해줘야 하지 않

9) 단체회원은 아닌 조선족동포 3세와의 인터뷰 내용 중(2012/2/14).

겠습니까. 이게 선진국 혹은 그렇게 민주를 외치는 한국에서 나와야 할 태도입니까"(방미화 2012, 85)

그들은 대체로 "개만도 못한 비인간적인 대우"(사례 B)를 문제삼으며 자본주의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에게 민주주의의 실종은 '비인간적 대우'를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란 조선족동포에 대한 임금 차별, 노동조건 차별, 그리고 제도적이며 일상적인 차별을 포괄한다.[10)]

특히 2009년에 글로벌경제위기로 조선족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어렵게 되어 그 보완책으로 기술연수비자(D4)가 도입되었을 때, 조선족단체들과 동포언론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때 변화된 상황은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40만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서 이들은 미등록상태 때와는 다른 상황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재외동포관련 한국의 시민단체(KIN)와의 연대를 통해 성명서와 항의공문, 그리고 학술포럼 형태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 기술연수비자에 따라 일주일간 학원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해야 했던 것을 주 2일, 3일간만의 교육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가 5년 기한으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로 할 때에 기술연수제도로 체류를 연장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조사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였는데, 조선족단체 내에서는 조선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압력을 행사하여 소수자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선족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정은(2011) 참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조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활동내용에 대한 고민으로 보인다.

> "2007년대에 방문 취업제가 생겨나면서 동포 스스로 생겨난 단체들이 많아요. 단체이름을 걸고서 정말 동포권위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 후원받고 행사 사업하고 이제는 겉포장만 해나간다는 거죠. 중국 동포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동포사회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중국 동포사회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사례 A)

2) 조선족단체들의 자발적인 교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족단체들은 등록과 미등록이라는 신분상의 변화에 의해 정치적인 사안에 몰두하던 것에서, 이제는 일상문화와 친목, 봉사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재외동포법이 적용되고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조선족 노동자들이 합법체류자로 전환되어 과거와 같은 집합행위는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우 2011). 국내의 중국동포단체들은 개별단체와 조직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선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풀이된다.

조선족단체들과 한국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보면, 조선족연합회의 경우는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관점이 같으면 한국의 어느 단체와도 연

대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국내의 조선족문제에 발언권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위한 연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KIN)와는 10년이 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 전체를 활동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익단체의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다. "단체 간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식은 재외동포법 개정과정에서 습득하게 되었다고 한다(사례 C). 이런 연대활동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국적 취득자가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한동포연합총회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부분에서부터 한국과 가까워지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연대활동도 한국의 문화활동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조선족동포들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국지역문화축제 등에 참가하여 조선족동포들의 존재를 알린다(이정은 2011, 240-241).

이 조직은 다른 조선족 단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2008년에 만들어져서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교류하고자 한다. 이런 활동들은 정부정책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행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존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조선족동포들의 제도적인 지위가 변화되어온 과정을 목도(目睹)하면서 그들에 대한 편협된 이미지를 바꾸고 한국사회와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민주적인 경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동포 사회와 한국사회와의 교류는 단순히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조선족동포들의 존재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를 알리며 그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일상문화 활동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조선족단체 소속 노인회를 중심으로 대림동지역 일대의 청소를 담당하며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동포 한마음협회'의 한마음봉사단은 주로 지역이웃을 돕거나 조선족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경찰과 순찰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선족동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재생산되거나 사회적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 사회의 정당한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활동이 순수한 자발성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시민권인 사회적 멤버십(social membership)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은 한 사회가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부여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원들 스스로가 지역문화에 참여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조선족동포들은 지역의 경계 내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와 교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교류와 소통은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소수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활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으며

모든 국민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이상적으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민주주의는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정치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완결된 형식이나 틀이 없는, 결국 '발명'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과 민중들의 저항은 민주주의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어 왔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조선족들의 저항과 개입도 한국 민주주의 실현, 나아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

경제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한국의 재외동포법이 식민지기에 해외로 이동한 동포들을 배제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차별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단체와 교회의 지원으로 조선족동포들은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격렬하게 저항하여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이뤄내어 방문취업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기술교육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데에 조선족동포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 저항과 요구가 수렴되는 과정을 경험한 조선족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활발한 문화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런 그들의 활동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는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의 구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aylor 1994). 차이의 정치는 말 그대로 개인과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차이를 한 사회가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 논의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은 같지만, 오랫동안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부딪쳐야 하며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에 낯선 존재, 새로운 문화, 그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 특이하고 '이상한 것'으로까지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주민 동포들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공정한 분배로서의 정의일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지구화된 사회에서의 정의와 분배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결집체를 조직하여 소통을 시도하며 한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선족동포들의 개인적·집단적인 노력들은 결국 차이의 정치의 발현, 문화적 인정의 틀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 조직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후 그들 스스로가 주체로, 대표로서 조선족들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수자로서 조선족동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되지 않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한 사회에서 길든 짧든 일정 지역을 점하며 정주하게 되는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늘 불안과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조선족동포들과 한국사회가 함께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들을 다문화나 동포담론의 이중적 틀에 가두지 말고 새로운 문화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선족동포들과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이들을 확인하여, '조선족주의'이든 소수자 담론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 정치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소수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섭. 2003.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김병조 외. 2011.『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김상학. 2004.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사회연구』 제7호. 대구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고병권. 2011.『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구지영. 2011a.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 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동북아문화연구』 제27집.

_____. 2011b. “지구화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칭다오(청도)의 사례를 통해.”『한국민족문화』 제40호.

권용혁. 2010. “민주주의와 소수자.”『사회와 철학』 제19호.

권준희. 2011. “이주(노무송출)의 맥락으로 살펴본 조선족의 발전.”『미드리』 제6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권태환 편저. 2005.『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권태환·박광성.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한국인구학』 27권 2호.

문 민. 2010. “재한중국동포단체 현황과 과제.”『미드리』 제4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롤즈, 존(John Rawls). 2003.『정의론』. 이학사.

랑시에르, 자크(Jacques Ranciere). 2007. 백승대 옮김.『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인간사랑.

박광성. 2008.『(세계화 시대)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_____. 2010.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재외한인연구』 21. 재외한인학회.

박 우. 2011. “한국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경제와사회』 91호.

_____. 2013. “한국체류 조선족노동자의 희망체류기간 결정요인분석.”『재외한안연구』 제30호.

방미화. 2012. “재한조선족의 정체성과 일상적 실천.”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박사논문.

벤하비브, 세일라(Seyla Benhabib). 이상훈 역. 2004.『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현실사.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이해.”『노동문제논집』 13호.

신영복·조희연 편. 2006.『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신현준 엮음. 2013.『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그린비.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사이에서: 한국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한국문화인류학』 35(1).

윤수종. 2005.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함의.” 윤수종 외.『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윤인진 외. 2010.『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이담.

예동근. 2009. “공생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조선족: ‘제3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논의.”『재외한인연구』 제19호.

_____. 2010. “글로벌 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북경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연구.”『한국민족연구논집』 43호.

예동근 외. 2011.『조선족 3세들의 서울이야기』. 백산서당.

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승률. 2007. 『동북아시대의 조선족』. 박영사.
이정은. 2011. “조선족동포사회의 차이와 소통의 문화정치: 한국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과 교류.” 『민주주의와 인권』 11권 3호.
_____.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 사회』 96호.
이진영. 2008.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 및 동포 만족도 조사』.
_____. 2010.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Working Paper, No.2010-11.
이진영·박 우. 2009. “재한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이진영·이철우·이근관. 2005. “조선족동포의 중국국적 취득: 그 시점과 자발성을 중심으로.” 법무부보고서.
이철우. 2008a.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회학』 42(1).
_____. 2008b.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사회』 제79호.
이현정. 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이현철·이채문. 2012. “재외한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중국 조선족의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6집 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임계순. 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임선일. 2010. 『에스니시티(ethnicity)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황정미. 2010.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 현. 2007. “한국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a. 『체류자격 개편방안 연구』.

_____. 2011b. 『재외동포의 이주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2011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2011.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D-4)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뇨녕조선문보』, 2007/08/14.

『한국성결신문』, 2003/11/29.

Taylor, Charls. 1994.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Torpey, John. 2000.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ssen, Saskia. 199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權香淑. 2011. 『移動する朝鮮族』. 彩流社.

투고: 2013.9.30 심사: 2013.10.10 확정: 2013.10.30